

현역·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

※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마시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
				20일	
지원자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	
	집 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
	병역사항	병역판정검사 연도		신체등급	역종
			급		[] 현역 [] 보충역
학력사항	대학(교) 과 년 ([]재학 []퇴학 []수료 []졸업)				
	입학 연월일		졸업 또는 수료예정 연월일		
지원사항	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		[]의무사관후보생(수련기관:)		
			[]법무사관후보생(수련기관:)		
			[]수의사관후보생(수련기관:)		
	[]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		5급 공채 구분()		소속 부처
				(전화:)	
		[]공중보건의사·병역판정전담의사		[]공익법무관	[]공중방역수의사

「병역법」 제34조, 제34조의6, 제34조의7,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·공중보건의사 등 복무를 지원하며,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현역의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중보건의사·병역판정전담의사·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지원자 (서명 또는 인)

병무청장 귀하

지원자 제출서류	1. 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신원진술서 1부 나.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. 기본증명서 1부 2.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: 없음 3. 공중보건의사·병역판정전담의사: 없음. 다만, 일반전공의 수련자가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련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4.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: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(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만 해당합니다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지원자 (서명 또는 인)